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인 자를 우선으로 하여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6% 부담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구분	급여제공시간/월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 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 해야한다.